

심사보고서

2024. 6. 11.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79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0. 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

나. 상정의결

-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4. 6. 11.)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정찬식)

가. 제안이유

-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탁사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계약 및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중요내용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민간위탁운영 적정성 심의를 위한 운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의2)
- 구의회 동의대상을 명확화하고 일회성 문구를 삭제함(안 제5조)
- 조례 내 2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명칭, 기능 등 구분 명확화(안 제8조 ~ 제10조)

- ‘지휘·감독’ 규정 내 ‘위탁의 취소’ 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신설(안 제13조 ~ 제13조의2)
- 수탁기관의 사용료 징수 규정 신설(안 제16조)
- 위탁기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재계약 연장 기간 명시(안 제20조)
- 시행규칙 조문 삭제(안 기존 제20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5. 3. ~ 2024. 5.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임.
- 안 제2조(정의)제4호에서는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같은 조 제5호는 “재계약”의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을 정의함에 있어 ‘재위탁’ 과 ‘재계약’ 은 행정편의를 위해 위탁기간 5년을 초과하는 재위탁으로, 5년 이내는 재계약으로 구분하고 자치사무인 경우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재계약은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용어정의를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은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 “재위탁” 의 경우 핵심은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구의회 동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는 것이므로 다시 민간위탁 선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때 재위탁 절차에 따라 조건을 갖춘 모든 기관 등은 계약대상이 될수 있음.

- “재계약”의 경우 핵심은 구의회 최초 동의 후 총 5년 이내에서 기존의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재계약 대상자는 오로지 기존의 수탁기관만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총 5년이 경과되는 경우 재계약이 종료되고 그 사무는 재위탁에 해당되어 구의회 동의 대상이 되는 것임.
- 같은 조 제6호에서 “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4호 및 제5호에서 이미 각 용어의 구분을 계약기간으로 구분하고 있어 별도로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거의 본문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 실익이 없어 삭제하더라도 무방해 보임. 다만,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임.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¹⁾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물의 운영관리 위탁이 수반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²⁾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³⁾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기준으로 처리하게 되어 그 위탁기간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5년 이내’가 위탁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하겠음. 따라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됨. 신설하는 제7호의 ‘중요내용’은 구의회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는 경우에 명시적으로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안 제4조의2(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운영평가위원회의 기능, 위원 구성 및 임기, 의결정족수, 위원 해촉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다

1) 「지방자치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시행 2022. 12. 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일부개정]

만, 제1항 중 ‘평가’ 보다는 제18조에 ‘성과평가’ 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의의 주체를 운영평가심의위원회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따라서 제2항제1호의 심의사항을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성과평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3항 중 ‘12명 이내’ 는 제9조제2항과 같이 ‘12명 이하’ 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4항제4호는 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기획경제국장과 복지생활국장이 각각 민간위탁 총괄 및 다수의 민간위탁사무를 맡고 있어 직무관련성이 높은 직위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되나 다른 관련 국장은 포함하지 않아도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보임.

- 안 제5조(승인 및 동의)제1항은 구의회 약칭을 제4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정비하는 것이고 제2항은 민간위탁 시 구의회 동의를 받는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보여짐. 다만, ‘동의’ 에는 사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사전’ 이라는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무방해 보임. 또한 제2항제1호 중 ‘일회성’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 로 확대·운영하려는 바 1년 단위 이하의 일회성 사무가 아닌 연례적·반복적 사무라도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짐.
- 안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제1항은 현행 공개모집 외의 수탁기관의 선정은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설되는 제4조의2에 따른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것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과 수탁기관의 선정을 분리·운영하려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여져 바람직해 보임. 제2항에서는 약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안 제9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약칭하면서 각 항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3항제1호 중 제4조의2제4항제1호에 이미 ‘강남구의회’ 가 약칭이 되어 정비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4호의 ‘단’ 단서조항은 ‘다만’ 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한편, 운영평가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므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명

확성을 위하여 이들 위원회 간 위원의 중복적인 임명 또는 위촉은 배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개정은 운영평가위원회와 심사위원회로 운영함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안 제13조의2(위탁의 취소)는 현행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여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다만, 민간위탁 계약은 취소가 아니라 해제·해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15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거나 <예시>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법령입안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6조(사용료 징수 등)제1항에서는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같은 조 제2항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인 바 승인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같은 조 제3항은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설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금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재정을 투명성있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음.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 용료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바 수익금과는 그 용어상 차이

4) <예시>

제13조의2(위탁계약의 해제·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정한 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가 있다고 보여짐. 한편,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업무편람>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해 조례로 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위탁료와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자체수입이 위탁비용을 대신하도록 하는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은 가능하나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20조(위탁기간 및 재계약)제1항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해당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탁기간 5년으로 규정한다면 안 제20조제1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제20조(시행규칙)을 삭제하려고 하나 집행명령에 대한 규정은 다른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그대로 두더라도 무방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79호

제안일자 : 2024.6.11.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법에 근거하여 위탁 기간 기준이 명시된 조문 내용 정비
- 중복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용어의 정확한 내용에 맞게 정비
- 개정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현행 조문을 유지

2. 수정주요내용

- 조문 내용 정비(안 제2조제5호, 안 제2조제6호, 안 제20조제1항)
- 용어의 수정 (안 제5조, 안 제13조의2)
- 현행 제20조를 수정안 제21조로 유지 (안 제2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 동의”를 각각 “동의”로 한다.

안 제13조의2의 제목 “(위탁의 취소)”를 “(위탁의 해제·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를 “해제·해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소하고자”를 “해제·해지하고자”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 본문 중 “3년 이내로”를 “5년 이내로”로, “3년 이내의”를 “5년 이내의”로 한다.

안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재위탁”이란 민간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개모집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하여 <u>다시 수탁기관</u>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p> <p>5. “재계약”이란 <u>수탁기관</u>이 위탁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u>5년</u> 이내의 범위에서 <u>연속하여 다시</u>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 ----- --- <u>다시 수탁기관</u>----- ----- -----.</p> <p>5. ----- <u>위탁받</u> <u>은 사무를 수행하고</u> <u>있는</u> ----- ----- <u>3년</u> ----- ----- <u>다시</u> <u>민간위탁 계약을 체</u> <u>결하는</u> ----- -----.</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p>5. ----- ----- ----- ----- ----- ----- ----- <u>5년</u> ----- ----- -----.</p>

6. “계약기간”이란 위
· 수탁기관이 위탁기
간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상호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략)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
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
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
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
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

- 3년 -----

-----.

7. (현행과 같음)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 구의회 -----

-----.

② 제1항의 구의회 사
전 동의를 신규, 재위
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
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 -----

- 5년 -----

-----.

7. (현행과 같음)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 동의 -----

-----.

②----- 동
의-----

-----.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생략)

<신설>

1. ~ 4. (생략)

<신설>

제19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
- 사무-----

2.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제1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

-----동의

1. (개정안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위탁의 해제·해지)

① -----

----- 해제·해지-----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해제·해지
하고자 -----

-----.

제20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
----- 5년 이
내로 -----

<p><u>다만,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u></p> <p>② ~ ④ (생략)</p> <p><u>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정하여 <u>3년 이내의 범위</u>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② ~ ④ (생략)</p> <p><u><삭제></u></p>	<p>----- <u>5년 이내의</u></p> <p>-----</p> <p>-----.</p> <p>-----</p> <p>-----</p> <p>-----.</p> <p>② ~ ④ (개정안과 같음)</p> <p><u>제21조(현행 제20조와 같음)</u></p>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수탁기관이 위탁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으로, “연속하여 다시 계약을 하는”을 “다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의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등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2.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비·인력 운영의 적정성
3.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4. 재위탁의 적정성 등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운영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3. 민간위탁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관련학과 교수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을 포함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총합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5. 그 밖에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⑧ 운영평가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남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의회의 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일회성 사무”를 “사무”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위원회”를 “운영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는”을 “심사위원회는”으로,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6항 및 제7항 중 “위원회”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위원회에 출석한 서울특별시”를 “심사위원회에 출석한”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심사·의결이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3. 민간위탁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관련학과 교수
4. 강남구 소속 공무원(단, 공무원인 위원의 총합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5.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운영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로, “심의”를 “심의(심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에”를 “해당 위원회에”로, “위원회는”을 “그 위원회의”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탁의 해제·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정한 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제1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와 시정요구사항,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3개월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5. “재계약”이란 <u>수탁기관이 위탁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속하여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u></p> <p>6.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u> ----- ----- <u>다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u></p> <p>6. (현행과 같음)</p> <p>7. “중요내용”이란 <u>위탁유형의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등의 사항을 말한다.</u></p> <p><u>제4조의2(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u>② 운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u>1.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u></p>

2.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비·인력 운영의 적정성

3.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4. 재위탁의 적정성 등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운영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3. 민간위탁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관련학과 교수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을 포함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총합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5. 그 밖에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⑧ 운영평가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남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생략)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7조에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

----- 구의회의 동의-----

--.

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 사무-----

--
2. (현행과 같음)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③ (생략)

제9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과 재위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

운영평가위원회

② -----

-----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심사·의결이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심사위원회는 -----

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교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생략)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

----- 심사위원회-----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3. 민간위탁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관련학과 교수
4. 강남구 소속 공무원(단, 공무원인 위원의 총합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5.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사위원회-----

-----.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사위원회-----

하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
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
척된다.

1. ~ 6. (생략)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
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생략)

-----.

⑦ 심사위원회-----

-----.

⑧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
회-----
----- 심의(심사를
포함한다)-----
-----.

1. ~ 6.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위원회에 -
----- 그 위원회의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지휘·감독)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정한 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④ 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미리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⑤ (생략)

<신 설>

제13조(지휘·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위탁의 해제·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정한 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16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

제16조 · 제17조 (생략)

제18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

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 제18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제19조(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0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와 시정요구사항,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3개월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와 시정요구사항,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3개월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4조의2)」 신설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상 조치를 크게 수반하지 않으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신설에 따라 발생하는 참석수당 예산은 소액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함

4. 작성자

- 기획예산과 행정8급 강성은 (02-3423-5462)